

⑮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⑯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적용특례를 보완하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변경허가제도를 일부 완화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의 산지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며, 채석에 관한 규정과 토사채취에 관한 규정을 토석채취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복구비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1월26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산업자원부장관**

●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이 법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⑨이 법에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 또는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벤처기업 등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투자를”을 “투자과 제4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로, “등록”을 “신고”로,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가. 국내지점 및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제4조의3제3항 중 “등록요건과 그 운영”을 “결성요건 및 신고사항 그 밖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한하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해외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그 밖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8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전담회사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법」 제299조의2·제422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지역 안의 국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한다.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제4조의2제8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④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 산업재산권등의 현물 또는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은 현금 출자를 할 수 없다.

③전문회사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산업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 및 감정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자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행위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3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벤처企業을 創業하거나”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제2절에 제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직무발명한 교원·연구원에 대하여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직 또는 겸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함에 있어서 「기술이전촉진법」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장제3절에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 또는 부지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함에 있어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에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 또는 부지 연면적에 대한 지정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지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②집적지역에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면적 이상인 지역을 제외

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 절차를 따른다.

③집적지역 중 지정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면적 이상이고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가 된다.

⑤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⑥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적지역 안에 창업자·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기 위하여 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종료되는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 또는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집적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지침)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지정·운

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의 지연,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8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4개 이상”을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제2항 중 “500제곱미터”를 “3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교원 또는 연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제20조 중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4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매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중소기업청장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교원·연구원의 휴직·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중소기업청장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 또는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등록의 취소 등)”을“(행정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요건”을 “결성요건”으로 한다.

1.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제2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5. 제17조의6의 규정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제31조 중 “제12조의2·제14조의2”를 “제12조의3·제14조의2제1항”으
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4제2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의2.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성·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
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성·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제4조의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
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
를 위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
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연구원의 창업요건을 완화
하는 한편, 벤처투자시장의 내실화 및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진출 중소기업 투자에 대
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